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1216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기

변론 종결2021. 12. 2.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11,057,349원 및 그 중 2,600,016원에 대하여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08. 12. 16.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49%로, 상환기일을 2010. 12. 16.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후 피고 B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3. 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4. 19. 이 법원 2017차전19148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26.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21,902원 및 그 중 582,157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2021. 6. 4.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1,663,259원(= 원금 582,157원 + 이자 1,081,102원)(이하 위 대출채권을 '제1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주식회사 E은 2010. 1. 15. 피고 B에게 4,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49%로, 상환기일을 2013. 1. 1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후 피고 B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E은 2012. 6. 8. 주식회사 F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6.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3. 1. 10. 주식회사 G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13.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3. 8. 8. 주식회사 H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8. 9.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5. 12. 1. 주식회사 I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3.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I는 2017. 1. 2. 주식회사 J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J는 2018. 1. 15. K 주식회사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31.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K 주식회사는 2019. 12. 13.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20. 1. 15.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1. 6. 4.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11,057,349원(= 원금 2,600,016원 + 이자 8,457,333원)(이하 위 대출채권을 '제2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 B의 부친인 L는 2016. 3.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M(상속지분 3/15), 자녀인 N, O, P, Q, 피고 B, 피고 C(각 상속지분 2/15)가 있다.

라.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6. 8.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 C는 2016.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J가 2017. 3. 13.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19853호로 제2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4. 11. 피고 B에 대하여 주식회사 J에 제2양수금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17.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2양수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B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양수금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17. 5. 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민소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 2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 2양수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제1, 2양수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1양수금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제1양수금채권은 변제기인 2010. 12. 16.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된 날인 2015. 12. 16. 24:00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7차전191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제1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명령신청은 제1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7. 4. 19.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2양수금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J가 2017.

3. 13.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19853호로 제2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4. 11. 피고 B에 대하여 주식회사 J에 제2양수금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17.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2양수금채권은 최초 변제기인 2013. 1. 14.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13. 위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17. 5. 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중 제2양수금채권의 존재만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훈

별지